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93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7.
3. 회 부 일 : 2025. 5.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⑭ (생략)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 -----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 -----. ② ~ ⑭ (현행과 같음)

현행 제214조의2¹⁾제1항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은 ‘관

- 1)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²⁾를 청구할 수 있음. 여기에서 '관할법원(管轄法院)'³⁾은 해당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한하지 않고,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⁴⁾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형법」상 내란죄 혐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인 당시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 2)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라 함은 법원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함.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에 대한 사법적 심사제도로서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체포·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하려는 인신보호제도임. 법원의 영장제도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에 대한 사전적인 사법적 억제제도임에 대해서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부당한 체포·구속을 시정하려는 사후적인 사법적 구제제도임.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형사소송법(Ⅱ)」, 제6판, p.378

- 3) 법원의 관할은 법정관할과 재정관할로 구분할 수 있고, 법정관할은 다시 고유관할과 관련사건의 관할로 구분되며, 고유관할에는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등이 있음. 또한, 토지관할의 경우에도 그 기준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이처럼 관할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관할법원이 인정될 수 있음.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6판, p.532

- 4)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형사소송법(Ⅱ)」, 제6판, pp.383~384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체포의 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게 되면서, 그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⁵⁾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사 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적부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구속의 적법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등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는바,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현행 제214조의2제12항⁶⁾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해당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관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5) SBS, “윤 대통령, ‘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노림수는?”, 2025. 1. 16.

6)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구속 필요성 등에 대한 심증이 이미 형성된 법관이 예단을 가지고 그 적부심사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사후적·객관적 사법 판단을 통해 부당한 체포·구속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적부심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를 이유로 ‘관할법원’이 아니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아울러, 위 제214조의2제12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관’이 이를 담당할 수는 없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현행법 제200조의37)에 따른 긴급체포나 제212조8)에 따른 현행범체포의 경우, 나아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기타 불법체포·구속 등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바, 개정안과 같이 적부심

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8)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사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게 되면 이들 경우에 대한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48
